

식약처,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

- 의약품·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와 질병 예방·치료 효능 표방 등 집중 점검
- 사이트 접속차단 및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요청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(THC)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·광고*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, 총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

* 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 시행(2026.1.1.)

- 식품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(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)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·광고 금지

주요 위반 사항은 ▲의약품 성분인 ‘카나비노이드’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·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8건(63.3%) ▲‘THC’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(18.3%) ▲‘수면’, ‘햄프씨드다이어트’, ‘면역강화’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·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건(13.3%) ▲‘항암’, ‘치매예방’, ‘비염’ 등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·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건(5.0%) 등이다.

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,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.

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.

<붙임> 주요 위반 사례

담당 부서	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홍태 (043-719-2051)
		담당자	사무관	최우정 (043-719-2055)
담당 부서	사이버조사팀	책임자	과장 직무대리	최경식 (043-719-1901)
		담당자	사무관	주민석 (043-719-1910)



구분	위반 표현
<p>✓ 질병 예방·치료 효능 표방</p>	<p>리 #항염 #항암 #치매예방 ;</p> <p>비염/ 노화방지/ 혈관/ 면역/ 피부미용 탁월!</p>
<p>✓ 의약품 오인·혼동</p>	<p>오일 CBD 카나비노이드 대마유 ;</p> <p>[원산지:미국] ★ 4.81 (최근 6개월 5.0) 548건 리뷰 80% 425,000원</p> 
<p>✓ 건강기능 식품 오인·혼동</p>	<p>관련 태그</p> <p>#식물성오메가3 #수면 #뇌건강 ;량 #햄프씨드다이어트 #</p> <p>#식약처인증 #햄프씨드 #FDA승인 #면역강화 ;</p>

구분	위반 표현
<p>✓ 소비자 기만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cbd 대마종자</p> <p>씨유 60캡슐 [원산지:상세설명에 표시] ★ 4.76 51건 리뷰 57% 65,000원</p> <p>su73****님 ★★★★★ 5.0 요거먹고 얼마나 폭 잤는지 늦잠자서 팔도 지각하고 저도 지각했어요 참당황스럽고도 웃기네요 효과가 확실합니다.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"> <p>THC 함유량 꼭 기억하세요! THC는 ‘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’이라는 성분으로 대마에 포함되는 정신작용물질 중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.</p> </div>